성주군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8.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함

2. 주요내용

○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농촌보육·청보센터의 시설종사자 및 보육료에 관한 사항(안제5조및제6조)
○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위탁운영 및 위탁의해지에 관한 사항(안제7조및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와 합의
다. 합의사항 : 사회복지과와 합의
라. 입법예고 : 조례안(제4조) 및 조례안(제6조)에 대하여 의견제출됨
※제4조 → 미반영, 제6조 → 반영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2장 제10조, 제12조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이 설치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이 설치·운영하는 센터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3조(업무) 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보육시설
 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영양·건강·안전관리 등)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설
 가. 초·중·고교생 방과후 학습지도(독서, 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업)
 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촌여성 고충상담
 다. 지역실정에 맞는 부정기사업(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농촌체험과 도농교류사업, 농촌주민 교육·문화활동 지원)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육시설 : 농업인 자녀 영유아(만4세이상 취학전 아동)를 우선하고 지역거주(센터소재지 읍·면우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2. 정보시설 : 초·중·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심이있는 농촌지역 주민으로 한다.

제5조(센터 종사자) ①센터에는 총괄책임자인 센터장과 종사자를 두며,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장(보육교사와 겸임)과 취사원을 둔다. 센터장은 상주하며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센터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②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육료 등의 수납) ①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센터장 및 보육시설의 장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자와 협의하여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③보육료의 수납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군수는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⑤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주군농정심의회 산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때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여성농어업인육성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